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0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한정애·조인철·주철현

어기구 • 박수현 • 추미애

송옥주 • 박희승 • 백혜련

정을호 · 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신종오염물질"이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水生態系)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 과불 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소독부산물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신종오 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5항)까지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수역에서 신종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신종오염물질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신종오염물질"이란 하천ㆍ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물환경보
	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질과 수생태계(水生態系)에 영
	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
	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OPs),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제26조의2(신종오염물질 종합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
	경부장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
	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
	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신종
	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신종오염물질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수역에서 신종오염물질을 배출한자에게 신종오염물질의 처리에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부담시킬 수 있다.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

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⑥</u> 제1항부터 제3항까지